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41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취득세 66,796,520원 및 가산세 8,843,850원, 지방교육세 13,359,300원 및 가산세 432,840원, ② 취득세 53,924,260원 및 가산세 7,091,030원, 지방교육세 10,784,840원 및 가산세 339,720원, ③ 취득세 97,850,210원 및 가산세 12,867,290원, 지방교육세 19,570,030원 및 가산세 616,450원의 각 부과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redacted]시 [redacted]구 B, 1층 C호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성남시 중원구 D(도로명주소: [redacted]시 [redacted]구 E) 지상 5층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D 건물 중 3층 전부 159.66㎡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 G으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H 대 925.1㎡(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5. 12. 22. H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9. 6. D 건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6. 9. 9.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3. 24. 광주시 I(도로명주소: [redacted]시 J) 지상 1층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K로부터 I 건물 중 일부인 33㎡(L호 우측)를 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900만 원은 2017. 5. 1. 각 지불),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20. 5. 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제2 임대차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약에 따라 K에게 2017. 3. 24. 보증금 중 계약금 100만 원을, 2017. 5. 1. 보증금 중 잔금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H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용도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인 2017. 5. 22. [redacted]시 [redacted]구 M에서 "N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인 O과 '분양, 컨설팅 및 전세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갑'은 원고를, '을'은 O을 각 의미한다), O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2017. 5.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위임범위)

갑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아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미분양 잔여세대 분양알선 - 잔여 6세대
2. 전세 전속계약
3.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컨설팅 업무

제4조(분양금액)

1. 분양금액은 갑이 작성한 분양단가표에 따른다.
2. 전세금은 저층(2층~4층) 2억 2,000만 원, 중층(5층~8층) 2억 3,000만 원, 고층(9층~13층) 2억 4,000만 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수수료
 - 매매수수료는 세대당 1,000만 원으로 하며, 전세 알선의 경우는 세대당 80만 원으로 한다.
2. 유지관리 등
 - 관고, 홍보비용 등 전반적인 분양에 관한 지원금은 갑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 샘플하우스 설치 및 계약을 위한 쇼파 등 가구, 컴퓨터, 전화 등 부대시설은 갑이 부담한다.
- 갑은 2017. 8. 31.까지 모델하우스 설치를 완료한다.
- 을은 2017. 9. 1.부터 모델하우스를 임차하여 관리한다.

3. 본 계약의 보증을 위하여 을은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 원고는 2017. 6. 1. I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6. 12.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준공한 후 2017. 9.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취득가액 6,091,780,1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로 0.0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88,837,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7. 2. 29. [redacted]시 [redacted]구 P 대 305.3㎡(이하 'P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0억 2,600만 원에, Q 대 308㎡(이하 'Q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R 대 308㎡(이하 'R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7억 2,0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2017. 9. 29. P, Q, R 각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취득가액 합계 57억 6,458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로 0.0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65,170,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집합건물과 P, Q, R 각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 취득이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과 P, Q, R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2. 원고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중과된 세율과 표준세율의 차액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해당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각 가산세를 부과 · 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중과된 세율

	이 사건 오피스텔	이 사건 토지
취득세	**0.044** [= {0.028(원시취득의 표준세율) × 3} - {0.02(중과기준세율) × 2}]	**0.08** [= {0.04(농지 외의 것의 승계취득의 표준세율) × 3} - {0.02(중과기준세율) × 2}]
지방교육세	**0.0048** [= {0.028(원시취득의 표준세율) - 0.02} × 0.2 × 3]	**0.012** [= {0.04(농지 외의 것의 승계취득의 표준세율) - 0.02} × 0.2 × 3]

[표2] 당초처분(단위: 원)

			이 사건 오피스텔	P 토지	Q, R 각 토지
과세표준			4,174,782,535	2,012,066,916	3,651,068,322
취득세	본세		66,796,520[1]	80,482,670[2]	146,042,730[3]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6,679,650[4]	8,048,260[5]	14,604,270[6]
		납부불성실	2,164,200[7]	2,535,200[8]	4,600,340[9]
지방교육세	본세		13,359,300[10]	16,096,530[11]	29,208,540[12]
	납부불성실가산세		432,840[13]	507,040[14]	920,060[15]

카.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던 건물에 관해 2018.

1) 과세표준 × [0.044(중과된 세율) - 0.028(표준세율)], 10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2) 과세표준 × [0.08(중과된 세율) - 0.04(표준세율)]
3) 과세표준 × [0.08(중과된 세율) - 0.04(표준세율)]
4) 본세 × 0.1
5) 본세 × 0.1
6) 본세 × 0.1
7) 본세 × 0.0003 × 108일
8) 본세 × 0.0003 × 105일
9) 본세 × 0.0003 × 105일
10) 과세표준 × [0.0048(중과된 세율) - 0.0016(표준세율)]
11) 과세표준 × [0.012(중과된 세율) - 0.004(표준세율)]
12) 과세표준 × [0.012(중과된 세율) - 0.004(표준세율)]
13) 본세 × 0.0003 × 108일
14) 본세 × 0.0003 × 105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7. 13. 용도변경(당초: 오피스텔 100% → 변경: 오피스텔 67%, 연립주택 33%)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7. 당초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부과 · 고지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감액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분과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P 토지		
		당초처분(원)	감액(원)	잔액(원)
취득세	본세	80,482,670	26,558,410	53,924,260
	가산세	10,583,460	3,492,430	7,091,030
지방교육세	본세	16,096,530	5,311,690	10,784,840
	가산세	507,040	167,320	339,720
		Q, R 각 토지		
		당초처분(원)	감액(원)	잔액(원)
취득세	본세	146,042,730	48,192,520	97,850,210
	가산세	19,204,610	6,337,320	12,867,290
지방교육세	본세	29,208,540	9,638,510	19,570,030
	가산세	920,060	303,610	616,4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6. 1. I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후 O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15) 본세 × 0.0003 × 105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따라 D 건물 3층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0.028이고, 승계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0.04이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 의하면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 [redacted]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전문에 의하면 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②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취득 전에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대도시 밖으로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문에서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6. 9. 6. 대도시인 [redacted]시에 있는 D 건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7. 6. 1. 대도시가 아닌 [redacted]시에 있는 I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후인 2017. 9. 21.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7. 9. 29.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과 이 사건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2016. 9. 6. D 건물 3층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redacted]시로 전입하였던 원고의 본점과 관계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3) 그러므로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6. 1. I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바, 여기서 본점의 이전 여부는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6두25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 9, 11,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2017. 9.말까지는 I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D 건물 3층에 본점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원고는 F에게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조로 2017. 7. 3., 2017. 8. 1., 2017. 9. 1., 2017. 10. 10. 각 16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2017. 6. 14. 주식회사 S로부터, 2017. 6. 22. 주식회사 T로부터, 2017. 6. 26. U회사으로부터 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사업장주소가 D 건물 3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제1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D 건물 중 3층 전부 159.66㎡인데 반해, 제2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I 건물 중 33㎡로, D 건물 3층 면적의 1/5가량에 불과하다. ④ D 건물 3층 중 V호, W호와 I 건물의 각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D 건물 3층		I 건물
	V호	W호	
2017. 1.	242	21	
2017. 2.	196	75	
2017. 3.	1,411	147	
2017. 4.	596	146	
2017. 5.	267	132	16
2017. 6.	215	70	0
2017. 7.	326	114	20
2017. 8.	326	100	42
2017. 9.	239	57	15
2017. 10.	235	39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까지는 I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F과 O은 O이 2017. 8. 31. F으로부터 D 건물 3층 전부 159.66㎡를 보증금 2,000만 원(계약 시 지불),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O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7. 8. 31.자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O은 2017. 11. 1.에야 F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개월분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영수증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O은 중개보조원 없이 혼자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②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까지는 도보 5분 거리, D 건물까지는 도보 6분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③ O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의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잔여 6세대의 분양알선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세계약의 중개뿐인바,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중개사무소 이외에 D 건물 3층 전부를 월 1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해가면서 2년간 임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가월세계약서 내용의 진실성 또한 의심스럽다.

다) [redacted]시 [redacted]구청 X, 지방세무조사보 Y가 2017. 9. 28.과 2017. 9. 29. 출장조사를 나갔을 당시 I 건물의 원고 사무실 출입문은 잠겨있는 상태였고, D 건물 3층의 원고 사무실 내부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전세입주 예정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이 있었으며, D 건물 3층의 원고 사무실에서 만난 원고의 대표이사 Z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원고의 주소가 D 건물 3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9. 12. I 건물로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2017. 9. 14.과 2017. 9. 15.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지창구

판사 최윤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1., 2014. 1. 1., 2014. 12. 23., 2015. 7. 24.>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9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redacted]특별시 ● [redacted]광역시([redacted]군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구역 및 [redacted]단지는 제외한다)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redacted]동 및 [redacted]만 해당한다)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 ● [redacted]시[반월특수지역([redacted]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생략	생략

끝.